

#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IPS) 실무사례집

2025. 1.

※ 이 자료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기업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사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 1 실무사례집 목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2.4월)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이하 IPS\*) 작성이 의무화됨

\* 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

- 사업장은 위원회(위원장 포함 5~7명)를 구성하여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운용 성과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IPS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IPS에 포함된 내용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로운 운용체계\*를 이뤄야 함

\* 예 : 운용 성과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정책을 수정·보완

- 한편, 사업장이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법정 최소적립금 충족)하고 점증하는 DB 운영비용(기준 책임준비금에 대한 납입 부담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금인상률 등 사업장의 미래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이하 퇴직부채)을 결정하는 요소와 연계하여 목표수익률을 세워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립금 운용상의 투자위험(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장기적인 분산투자 정책을 마련·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장의 퇴직부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외 적립금은 사업장이 감내할 수 있는 투자위험의 한도 내에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장기 운용

- 본 사례집은 사업장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분산투자 관점에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운용사례와 고객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다수 사업장이 연금기금과 같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되지만 원금손실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품(이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운용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무사례를 제시함

## 2 주요 내용

### 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자문제도 사례

-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자금운용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자문제도 등 대안을 제시

### 나.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사례

- 투자자산 다변화 검토 등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사례(실무 보좌조직, 안전 사전검토기간, 경영진 보고 등)를 제시

### 다. IPS 목표수익률 설정 사례

-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점증하는 DB 운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부채의 결정요인과 연계한 합리적 수준의 목표수익률 설정 사례를 제시

### 라. IPS 자산배분정책 및 투자위험 관리기준 사례

-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자산배분 한도 및 투자위험 관리기준 사례를 연금 기금과 같이 고도화된 수준, 실적배당형 상품을 처음 운용하는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수준으로 이원화하여 제시

### 마. IPS 적정유동성 확보 사례

- 최근 5년간 퇴직급여의 평균 지급비율에 기반하여 단기 유동성 자금의 적정 규모(상한)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

### 바. IPS 운용성과 평가 및 보상 사례

- 장기(5년) 관점의 평가원칙, 운용실적의 계량화된 평가, 중장기 분산투자 추진 등 운용체계 개선 측면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 연계,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임직원에게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사례를 제시

### 사. 퇴직연금사업자 서비스 사례

- 사업자가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 감면정책 등을 설명

## II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자문제도 사례

## 1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이 위원을 위촉)
  - 단,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은 ① 근로자 대표,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2 금융권 사례

- [미흡사례] 위원회의 다각적인 안건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나,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문성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거나, 동일 부서의 직원을 2명씩 위원으로 선정

### 미흡사례 예시 : 위원 구성

- [위원장] 퇴직연금 담당 임원
- [위 원] A부서의 장, A부서의 팀장, B부서의 장, B부서의 팀장
- ※ A·B부서 모두 퇴직연금 또는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음

- [모범사례] 퇴직연금 담당, 자금운용 담당,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을 모두 위원으로 위촉, 위원의 안건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유관부서 실무자 등) 및 외부전문가(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제도'(의결권 없음) 운영

### 모범사례 예시 : 위원 구성

- [위원장] 퇴직연금 담당 임원
- [위 원] 인사노무 부서장, 경영기획 부서장, 자금운용 부서장, 리스크관리(또는 재무회계) 부서장, 퇴직연금 부서장

### 모범사례 예시 : 자문제도

- 위원회는 의결로 자문위원을 선임·운용
- 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회의 참석, 컨퍼런스콜 등)
-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 1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함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IPS를 심의**하며, IPS에는 ①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 수익률, ②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 ③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④ 운용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2 금융권 사례

- 위원회의 **중요 심의·의결사항을 내부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역할 및 책임을 강화
  - 자산 다변화(실적배당형 상품 포함)를 위한 **신규 운용방법에 대한 검토**, 적립금 운용담당자 대한 **교육\*** 실시계획 등 포함
    - \* [교육 내용] 임직원 윤리강령, DB제도, 퇴직부채 분석, 자산배분정책, 신규 운용방법 등
    - [교육 방법]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외부 교육기관(금융투자협회 온라인 강의 등) 활용 가능
-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보좌조직 구축**,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기간 부여** 등
  - 회의결과를 위원에게 서면 통보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 경영진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다변화(실적배당형 상품 포함) 원칙이 실천되도록 지원

## 모범사례 예시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제·개정(적립금 운용 목적 포함)
  2. 목표수익률 설정 및 변경
  3. 자산배분정책 수립 및 변경(신규 운용방법에 대한 검토 포함)
  4. 적립금 운용 성과평가
  5. 적립금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6. 적립금 운용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
  7.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 사항

모범사례 예시

<p>실무 보좌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위원회(인사부장, 급여팀장, 재무팀장, 퇴직연금팀장, 리스크팀장)</li> <li>· 위원회 사무국(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문가 5명 참여)</li> <li>· 사내 전문적인 자산운용 조직</li> </ul>
<p>안건 사전검토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영업일* 전까지 안건 배포</li> <li>* 단, 긴급한 사항에 따라 소집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 생략 가능</li> </ul>
<p>대면회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운영지침에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li> </ul>
<p>이해관계자 제척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1] 위원장 및 위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자신, 위원장 및 다른 위원에게 있다는 사실(정황 포함)을 인지할 경우 이를 위원회(위원장 관련 사안의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 위원회(경영진)는 해당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li> <li>· [사례 2] 위원회의 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은 의결권 행사 불가,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불산입</li> </ul>
<p>회의록 작성·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의결 사항과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li> <li>* 안건(배포일자 포함) 및 결과, 찬반 의견 및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li> <li>· [보존] 영구 또는 10년</li> </ul>
<p>회의결과 통지, 경영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대표이사, CFO</li> <li>*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의 심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각 위원에게 공문, 서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위원의 확인을 받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최고 경영진에 보고</li> </ul>

## IV

# IPS 목표수익률 설정 사례

## 1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 IPS는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IPS 표준안 : “제6조(목표수익률) \_년 목표수익률은 \_%로 한다.”)

## 2 금융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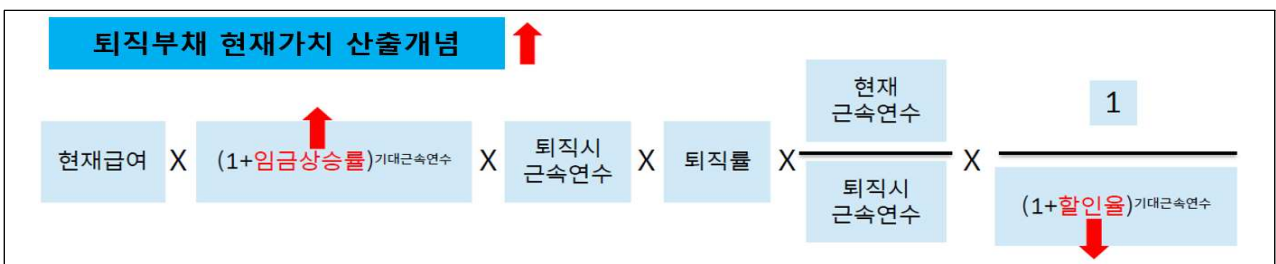
-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퇴직부채 현재가치의 결정요소인 임금인상률 또는 재정검증 할인율\*을 사용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퇴직부채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함께 고려하기도 함

\*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 목표수익률은 미래 퇴직급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부채의 결정요소와 연계하여 수립하며, 이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운용상품의 수익률을 합리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IPS의 목표수익률 설정 관련 업무 프로세스

- ① 모범 사례 : 목표수익률 수립 → 자산배분정책 마련 → 상품 포트폴리오 결정
- ② 미흡 사례 : 상품 포트폴리오 결정(예 : 원리금보장형 100%) → 목표수익률 수립(예 : 원리금보장형 상품들의 평균 기대수익률에 끼워 맞추어 목표수익률 설정)



### 모범사례 예시 : 퇴직부채 연계 목표수익률

· ‘5년간(년~년) 목표수익률은 연평균\_%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하며, \_년 목표수익률은\_%로 한다.

· ‘임금상승률(예 : 과거 5년 평균) ± 조정률’ 또는 ‘Max[임금상승률, 할인율] ± 조정률’  
(보다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 시 : ‘Max[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부채 증가율] ± 조정률’)

※ 조정률 : 과거 일회적 임금 상승효과(조정률 차감), 퇴직연금 수수료율 및 기타 DB 운영비용(조정률 가산) 등 고려

※ 낮은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운용하던 사업장은 3~5년간 점진적 상향(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 이용)

## 1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3,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 IPS의 자산배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원칙(IPS 표준안)\*을 준수하여 사용자가 자율 결정

\* 위원회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자산유형별 기대수익률, 과거 수익률 및 동 수익률의 표준편차, 상관관계 등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산배분정책을 수립, 위원회는 적립금을 특정한 운용방법에 집중되지 않게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2 금융권 사례

- 장기 투자 관점에서 향후 5년을 단위로 자산배분정책을 수립하며, 연금기금 수준의 자산배분 한도 및 투자위험 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의 투자성향 및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쉽고 직관적인 한도를 운영

\* 예 : 향후 5년간 적립금의 원금손실 발생확률(Shortfall Risk)을 5% 이내로 관리

- 쉽고 직관적인 한도의 경우 향후 5년간 실적배당형 상품의 목표비중을 설정한 후, 사업장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이 경우 연금기금 수준의 투자위험 관리기준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 한편,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만 적립금을 운용하던 사업장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자산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실적배당형 목표비중(예 : 20%)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 비율씩 적립식으로 확대

### 모범사례 예시 : 쉽고 직관적인 자산배분정책

- 전체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투자비중(예 : 20%) 설정\*
- \* 상한 : 전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퇴직부채 듀레이션) 이상의 지급기간(듀레이션)을 가진 퇴직부채 비중 이내로 제한
- 투자비중 내에서 사업장의 투자성향(안전형, 중립형, 적극형 등)에 따라 상품 선택\*
- \* 예 : ①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보장 추구 : 저위험 펀드  
② 정기에금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에금보다 높은 투자위험) 추구 : 국공채 또는 채권형 펀드
- 퇴직연금사업자의 중장기 자산배분정책 사례(매년 5%씩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 증가)

목표 자산배분비율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원리금보장	100%	95%	90%	85%	80%
실적배당	0%	5%	10%	15%	20%

**모범사례 예시 :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자산 확대 방법**

· [사례 1] 5년 후 실적배당형 상품의 목표비중(예 : 20%) 설정,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매년 1/5씩 점진적 비중 확대

[사례 2] 5년 후 실적배당형 상품의 목표비중을 달성할 때까지 적립금 이자수익 또는 신규 부담금의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매년 투자

※ 시장 상황 등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이용하여 투자비중의 확대·유지 여부 결정

**모범사례 예시 : 연금기금 수준의 자산배분정책**

(통계적 확률 기반의 투자위험 관리기준(Shortfall Risk) 별도 설정)

· 투자위험 관리기준(통계적 확률분석 기반) 사례

- ① 향후 1년간 적립금의 원금손실 발생확률(Shortfall Risk)을 1% 이하로 관리
- ② 향후 5년간 적립금의 원금손실 발생확률(Shortfall Risk)을 '5%/15% 등' 이하로 관리
- ③ 향후 5년간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 이하가 될 확률(Shortfall Risk)을 15% 이하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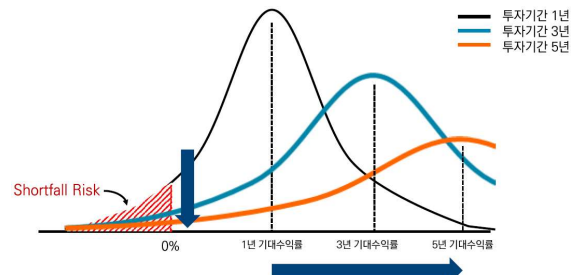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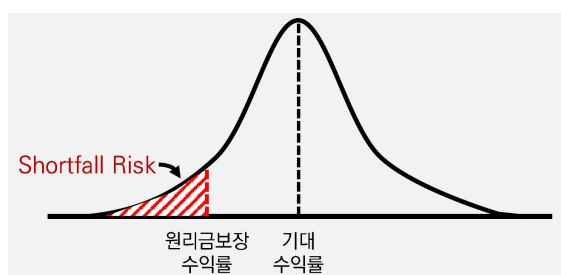
→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통해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 퇴직연금사업자의 중장기 자산배분정책 사례

(%)		장기(5년) 자산배분 목표					매년 자산배분 변경가능합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단기	원리금보장	20.9	20.7	20.3	19.3	18.2	± 5.0
중장기	원리금보장	-	-	-	-	-	-
	국내채권	15.5	16.8	16.9	15.7	16.2	± 12.0
	해외채권	-	-	-	-	-	± 10.0
	국내주식	12.6	11.3	13.1	13.1	13.2	± 5.0
	해외주식	12.3	11.7	10.4	12.4	12.6	± 5.0
	대체투자	38.7	39.5	39.3	39.5	39.8	± 1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 Shortfall Risk 개념

-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일정 수익률(예 :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0%)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장기투자일수록 감소)
-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해당 확률을 계산



## 1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용

\*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 IPS 표준안을 통해 적립금 운용부서는 **적립금의 운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

## 2 금융권 사례

- 충분한 퇴직급여 지급여력을 갖추되 **과도한 단기자금 보유 시 중장기 운용 자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과거 퇴직급여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유동성 자금(단기)의 한도(상한) 운영**
  - **[유동성 한도]** 최근 3~5년간 퇴직급여 지급액의 산술평균에 향후 1년간 인사 정책(퇴직 등) 등을 감안하거나, 연금계리적으로 산출된 예상 퇴직급여를 고려하여 적정유동성 한도 산출
  - **[운용방법]**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수익의 불이익**(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없이 2영업일 내에 지급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

### 모범사례 예시 : 적정유동성 규모

· **최근 5년간 연평균 퇴직연금 지급비율**(= 연지급액 ÷ 연초 퇴직부채)에 **일정 배수(2~3)를 곱한 비중\***을 단기 유동성 자금의 한도로 설정

\* 상한 : 전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퇴직부채 듀레이션) 미만의 지급기간(듀레이션)을 가진 퇴직부채 비중 이내로 제한

※ 전체 적립금 중 적정유동성 자금(단기)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중장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운용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 통상 1년 만기 단기상품보다 금리가 유리하며, 연중으로 만기를 다변화(예 : 2.5년, 3.5년 등)하면 만기 시점에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 대비)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선점 가능

## 1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9조의3,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IPS에 적립금 운용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위원회는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함
  - 운용성과는 목표수익률과 운용자산별 수익률 및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 운용방법별 특성에 따라 중장기 수익률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

## 2 금융권 사례

- 적립금 운용성과는 장기(5년 이상)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단기(1~2년)평가와 병행, 복수의 운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단위의 성과평가 실시
  - [평가] 운용수익률의 경우 운용자산의 사후관리 전략과 연계된 계량화된 평가 방법 활용, 장기적 관점의 자산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보다 중장기 운용 성과에 더 높은 가중치 부여, 개별 사업자\* 및 전체 적립금에 대해서도 평가
    - \* 실적 부진 사업자에 대한 적립금 배분액 축소, 사업자 교체 등 검토 시 참고
  - [보상]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의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담당 조직 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정책과 연계\*,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임직원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내부 운영지침 명시)
    - \* 장기 자산배분전략 추진, 리스크관리 강화 등 운용체계의 개선 성과도 균형 있게 고려

### 모범사례 예시 : 운용실적 평가방법

(퇴직연금사업자 컨설팅을 통해 자사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 설정 가능)

- 운용성과의 평가 목적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달성되도록 함에 있음
-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인 시장 대표지수) 대비 초과 또는 미달 성과의 정도를 평가
- ‘단기/중기/장기’ 성과를 각각 평가하여 장기일수록 큰 가중치를 두어 종합 평가(가중평균), 개별 사업자 및 전체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대해서도 평가

#### ① 원리금보장형 상품

- 측정방법 : ① ‘단기/중기/장기’ 기준수익률 평가(중장기 기준수익률은 연단위 기준수익률을 시간가중하여 산출), 장기적 운용 위해 장기>중기>단기 順 가중치 부여

㉑ 기준수익률 : 한국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예시, 월별금리 산술평균)

- 평가기준

구분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 실제수익률 - 기준수익률)				
	+1%p 초과상회	+0.5%p 초과상회	-0.5%p ~ +0.5%p	-0.5%p 초과하회	-1%p 초과하회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부진	매우 부진
점수	100	80	60	40	20
최종 점수	(최근 2년 성과점수 × 20%) + (최근 3년 성과점수 × 30%) + (최근 5년 성과점수 × 50%)				

### ㉒ 실적배당형 상품

- 측정방법 : ㉑ ‘단기/중기/장기’ 운용성과 평가, 최종 점수 산출 시 장기(중기)단기 順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연금자산의 중장기적 운용 지향

㉑ 1년 초과 투자기간에 대한 평가는 기간수익률 산출(연환산 수치 사용)

㉑ 수익률 : 기준일 대비 비교일의 지수 등락률로서 아래와 같이 측정

\* 자산별 수익률 = (비교일의 지수 - 기준일의 지수) ÷ 기준일 지수

전체자산의 수익률 = ∑[자산별 수익률 × 전체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적립금 대비 개별 자산별 투자비중]

- 기준수익률 :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국내채권) KIS 종합채권지수, (해외채권) JP Morgan Global Government Bond Index

- 평가기준

구분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 실제수익률 - 기준수익률)				
	+2%p 초과상회	+1%p 초과상회	-1%p ~ +1%p	-1%p 초과하회	-2%p 초과하회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부진	매우 부진
점수	100	80	60	40	20
최종 점수	(최근 2년 성과점수 × 20%) + (최근 3년 성과점수 × 30%) + (최근 5년 성과점수 × 50%)				

### ㉓ 종합 평가

- 최종 평가점수 : 원리금보장형 상품 점수 × 투자비중 + 실적배당형 상품 점수 × 투자비중

- 사업자별 포트폴리오 및 운용방법별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산출하여 사업자에 대한 운용자산 배정 및 적립금 배분액 조정, 상품 변경 검토 등에 활용\*

\* 예 : 2년 연속 ‘매우 부진’ 등급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조정 검토(대외 시장여건 전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 ‘부진’ 등급에 대한 모니터링(주기 등)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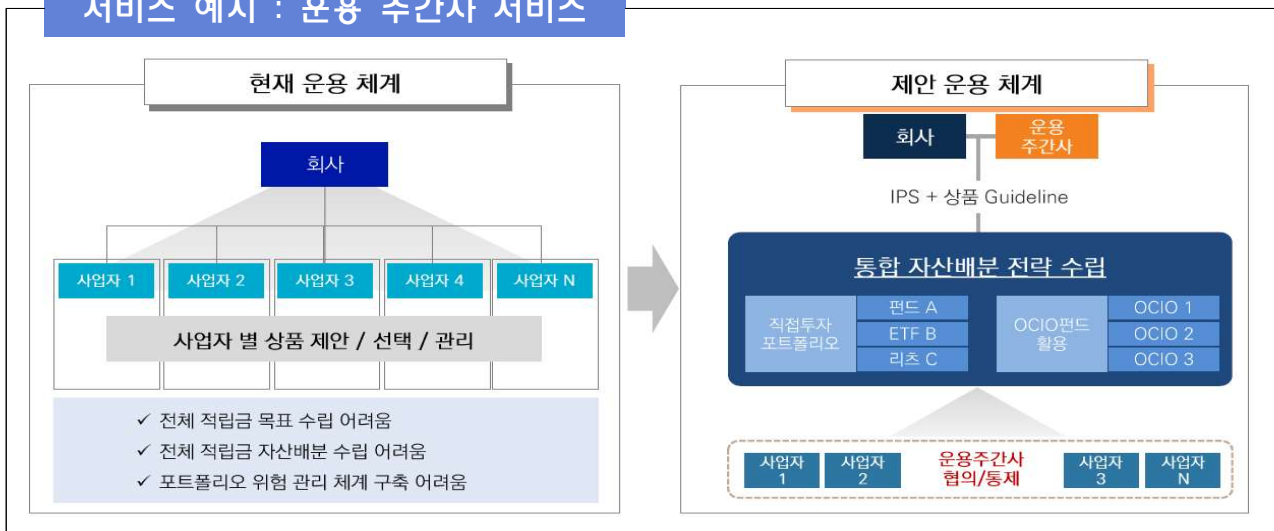
### 모범사례 예시 : 보상정책

-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DB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적립금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위험을 추구하지 않고 중장기 자산배분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자산(실적배당형 상품 등)·만기 다변화 등 운용체계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보좌조직의 임직원에게 성과평가 및 보상을 담당하는 조직(또는 임원)에게 위 사항을 보상정책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1 운용 주간사 서비스

- 사업장이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운용 주간사' 서비스 이용(무료) 가능
  - 운용 주간사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에게 분산 운용되는 적립금과 상품의 통합 관리를 지원(예 : 통일된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자산배분정책 조정 등)

### 서비스 예시 : 운용 주간사 서비스



## 2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감면

- 다수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장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정책을 시행 중임

### 서비스 예시 : 실적배당형 상품 관련 수수료 감면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 할인/면제
- 실적배당형 상품에 전체 적립금의 70% 이상 운용 시 수수료 할인/면제
-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운용손실 발생 시 손실액만큼 수수료 면제 등

## 3 사업장에 대한 퇴직부채 및 시장 분석 컨설팅

- 합리적 수준의 목표수익률 산정 등을 위해 가급적 매년(최소 3년에 1번) 퇴직 부채 구성 및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분석 컨설팅 제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③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2.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적립금운용계획서(이하 '계획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재 및 장래의 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수익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준수사항)** 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② 금융상품 발행회사 등과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 규범에 반하거나 분석 및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계획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용한다.

②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립금 운용의 원칙)**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관련 법령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준수
2. 적립금 투자의 안정성 확보
3. 퇴직급여 지급 등 유동성 충족
4. 목표수익률의 달성

**제5조(적립금 운용의 목적)** 적립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금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금부채의 지급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것
2. 퇴직자 발생 시 원활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

**제6조(목표수익률)** \_\_\_\_년 목표수익률은 \_\_\_\_%로 한다.

**제7조(자산배분정책 수립)** < 사용자 자율 작성 >

※ 원칙: 위원회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자산유형별 기대수익률, 과거 수익률 및 동 수익률의 표준편차, 상관관계 등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산배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적립금을 특정한 운용방법에 집중되지 않게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산배분정책의 심의 및 조정)

- ① 위원회는 자산배분정책 조정 여부를 1년마다 재심의한다.
- ② 적립금 운용부서는 경제상황이나 시장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운용성과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자산배분정책을 벗어나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 운용부서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경제상황의 급변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배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적정유동성 확보) < 사용자 자율 작성 >

※ 원칙: 적립금 운용부서는 적립금의 운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방법의 선정) ① 투자대상자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하위 법령에서 명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리금보장상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평가(자본 적정성, 부실징후 등 확인)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평가한 후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적배당형 상품은 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정량적 측면(기간수익률, 총자산금액, 업종별 투자비율, 총보수비용 비율 등)과 정성적 측면(운용계획,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적립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및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운용관리기관에게 신규 운용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성과의 평가) ① 위원회는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적립금 운용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운용성과는 제9조의 목표수익률과 각 자산별 수익률 및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운용방법별 특성에 따라 중장기 수익률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운용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인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된 경우에는 운용상품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립금 운용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운용성과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 운용담당자의 의무와 면책) ① 적립금 운용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적립금 운용에 있어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운용담당자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고,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과 차등하여 특별히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